

石油産業 관련 법령 정비추진과제

- 전국경제인연합회 -

1. 추진배경

- 통제 중심의 石油事業法체계 형성에 따른 石油産業의 비효율성 초래.
- 石油事業法 제정 이후 현격히 변화한 경제여건에 따라 石油産業규제정책에 대한 발본적인 재조명 필요.
- 우리의 경제규모 확대 및 石油안정공급기반의 구축으로 石油産業자율화 추진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과의 관계설정이라는 차원에서도 石油事業法 제검토 필요.

2. 규제현황

(1) 정부측에서 보는 규제 이유

- 국제석유사정 급변 등 비상시 대처를 위한 정부 통제 기능의 유지.
- 산업정책 및 민간안정적 차원에서 石油자원의 적정배분.
- 石油가격 통제를 통한 효율적 물가관리
- 石油의 안정적 공급확보 위한 소비자 정제주의 기조 유지

(2) 石油事業法の 요지

- ① 시장참여
 - 石油精製業(동자부장관의 허가)
- ② 시설투자
 - 시설의 新·增設 및 개조(동자부장관의 허가)
- ③ 생산
 - 생산계획 및 생산계획 변경의 신고(동자부장관)

- ④ 原油도입
 - 原油구입 및 수송계약승인제(동자부장관)
- ⑤ 油價관리
 - 石油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동자부장관의 고시)
- ⑥ 石油事業基金
 - 기금의 설치·조정·용도·관리 등 규정
- ⑦ 石油수급조정
 - 石油수급의 중대차질 발생시 石油배정, 시설가동, 수출입, 제품규격, 유통구조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정명령 가능
- ⑧ 유 통
 - 石油판매업-동자부장관의 허가(시·도지사에 위임)
- ⑨ 기 타
 - 품질검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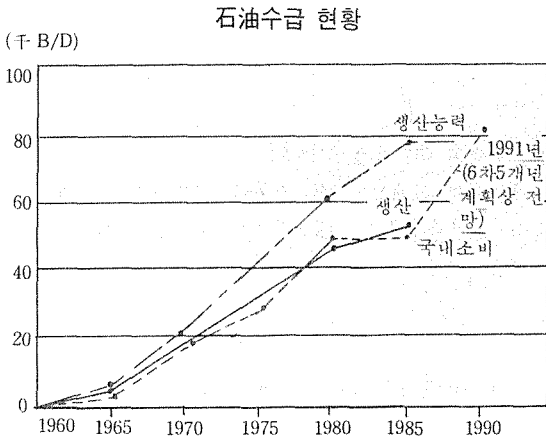
3. 석유산업 현황

(1) 精油社別 현황

	설립 년도	원유처리능력 ¹⁾ (千B/D)	시장점유율 ¹⁾ (%)	외국합작선
油 公	1962	280	44.4	Gulf (1980 철수)
湖南精油	1967	380	33.6	Caltex
京仁에너지	1969	60	9.6	UNOCO (1983 철수)
雙龍精油	1976	60	8.7	NIOC (1980 철수)
極東精油	1964	10	2.4	

〈註〉 1) 1987년 기준

(2) 국내석유수급추이



(3) 주요 石油製品 소비자가격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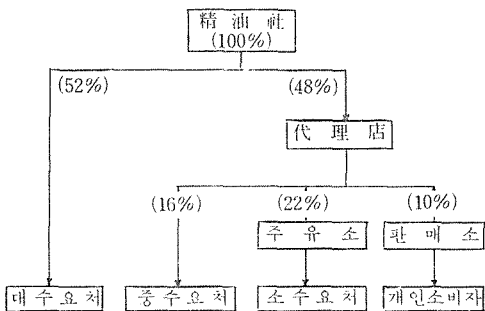
(韓國=100)

	韓國 ¹⁾	日本 ²⁾	臺灣 ²⁾	美國 ²⁾
보통휘발유	100	171	98	42
燈油	100	151	150	-
輕油	100	227	146	116
B - C油	100	131	112	70
L P G	100	337	66	33

〈註〉 1) 1988년 6월 기준

2) 1988년 3월 기준

(4) 石油製品 유통경로



註: 숫자는 판매비중(%), 1986년 기준)

4. 석유산업 변천과정

- 1935년 6千B/D규모의 朝鮮石油 설립
- 1949년 Caltex등 3大 메이저로 구성된 大韓石油貯藏會社 설립하여 모든 석유류의 저장·판매 담당
- 1955년 韓國·美國·大韓石油貯藏會社의 3자협정으로 韓美石油運營協定 체결하여 石油製品의 취급·저장 및 관리
- 1962년 3萬 5千B/D 규모로 大韓石油公社 설립 (걸프 경영참여)
- 1966년 6만B/D규모로 湖南精油 설립(칼텍스 합작)
- 1970년 국내 정유산업을 메이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石油産業을 기간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石油事業法 제정
- 1970년대 들어 京仁에너지 설립을 비롯하여 신·증설 활발히 추진
- 1980년 이후 칼텍스 제외한 걸프 등 메이저 철수
- 1988년 현재 국내생산능력 79萬B/D

5. 개선 기본방향

- 石油産業의 경쟁여건이 어느정도 성숙된 만큼 다른 일반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쟁원리 도입
 - 石油精製業의 신규참여 문제
 - * 객관적 허가기준의 설정
 - 설비투자의 자율화
 - 原油도입 자유화
 - 油價의 자율화
 - * 부당한 가격 인상 등은 공정거래차원에서 규제
 - 石油 유통부문 신규참여 완화 및 공정경쟁여건 조성
 - * 시설 및 보호요건만 갖추면 허용
- 官民 역할분담기능의 정립
 - 비상시 정부 통제기능 유지
 - * 석유위기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적용 가능한 "石油需給安定化法(가칭)"등을 별도 입법
 - 평상시 시장기능 최대 보장
 - * 정부는 민간에의 정보제공, 자원의외 등에 주력

6. 부문별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시장참여(精油精製)

가. 현행제도

法	施 行 令
<p><石油精製業의 허가></p> <p>① 허가권자(제4조) 動力資源部長官</p> <p>② 허용요건(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의 石油精製시설의 처리능력이 石油수급계획에 비추어 심히 과대하지 않을 것. ○ 石油精製業을 행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있을 것. ○ 외국인 투자비율이 과대하지 않을 것. ○ 石油精製사업계획의 내용이 石油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확보함에 적절할 것. 	<p><石油精製業의 허가요건>(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신청한 石油정제시설 가동시 가동하는 연도의 국내石油정제능력이 국내석유 수요량의 130%이상이 되지 않을 것. ○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초과하지 않을 것. ○ 허가신청자의 石油정제시설의 정제능력 60일본 이상의 양에 해당하는 原油와 石油製品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p><허가신청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石油製品 유종별 생산계획 ○ 石油製品 정제시설 건설계획 ○ 石油製品 정제방식 및 정제공장 ○ 原油의 구입계획 ○ 原油 및 石油製品의 저장시설 건설계획 ○ 石油製品의 판매계획 ○ 자금조달계획 ○ 수지계획 ○ 소요인원의 고용계획 ○ 국제수지효과 3. 차관계획서 또는 외국인투자계약서 사본(외자도입 경우) 4. 정관(법인에 한함)

나. 현 황

- 현재 5個社가 시장참여하고 있으며, 精油社間 기존 점유율 유지 합의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80년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음.
- 精油社의 이윤율규제(세후 자기자본의 10%) 등으로 경영합리화 및 원가절감 유인이 적은 편이며, 따라서 이익수준이 제조업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임.

精油社別 시장점유율 (단위 : %)

	1980	1982	1985	1987
油 公	46.6	42.8	39.2	44.4
湖 南 精 油	38.6	35.0	36.6	33.6
京 仁 에 너 지	9.4	9.7	8.6	9.6
雙 龍 精 油	3.9	9.5	11.7	8.7
極 東 精 油	1.5	2.1	2.8	2.4
(麗 水 에 너 지)		1.1	0.9	1.3

주요산업의 自己資本利益率 비교 (단위 : %)

	精油業	化學	自動車	家電	製造業평균
1983	0.5	10.6	23.3	21.4	9.6
1984	4.8	6.6	14.5	12.1	6.8
1985	11.2	6.3	12.7	10.0	5.8
1986	9.4	9.2	10.6	12.5	10.9
1987	9.8	8.9	12.3	10.1	10.9
평균	7.1	8.3	14.7	13.2	8.8

다. 문제점

○ 허가기준中 경제능력 및 기술능력에 대해 추상적으로

가. 현행제도

法	施行令
<石油정제시설등의 허가>(제7조) ① 허가권자 動力資源部長官 ② 허가사항 ○ 정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개조 ③ 허가요건 ○ 石油精製業 허가요건 준용	<중요한 시설의 개조> (제7조) ○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 - 상압중류시설 - 개질시설 - 가스회수시설 - 진공중류시설 - 분해시설 <구비서류> ○ 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시설개조의 경우 제외) - 石油製品 유종별 생산계획 - 정제시설 건설계획 - 정제방식 및 정제공장 - 原油의 구입계획 - 原油 및 石油製品의 저장시설 건설계획 - 石油製品 판매계획 - 자금조달 계획 - 수지계획 - 소요인원의 고용계획 - 국제수지효과 ○ 차관계획서 또는 외국인투자계약서 사본(외자도입 경우)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石油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에 저해되지 않을 것 등 정부의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시장진입이 행정의 자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인위적 진입규제로 인해 산업내 경쟁유인이 적음으로써 石油産業 경쟁력 향상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라. 외국의 예

○ 日本의 경우, 「石油業法」上 신규참여는 허가제임. (허가요건은 우리나라와 비슷)

(2) 施設投資

나. 현 황

○ 石油정제능력이 1980년대초까지는 크게 증대되어 왔으나, 石油수요감소 등에 따라 최근 시설과잉으로 적정가동율을 하회하고 있음.

精製能力 및 가동율추이

(단위 : 千B/D)

	油公	湖油	京仁	雙龍	極東	計	가동율
1970	115	100	-	-	5	220	89.6
1973	175	160	60	-	5	400	73.5
1976	215	160	60	-	5	440	86.2
1979	280	230	60	-	10	580	86.4
1981	280	380	60	60	10	790	61.8
1982	280	380	60	60	10	790	60.0
1983	280	380	60	60	10	790	66.1
1984	280	380	60	60	10	790	70.0
1985	280	380	60	60	10	790	69.7
1986	280	380	60	60	10	790	72.7
1987	280	380	60	60	10	790	73.2

* 87년중 石油製品 日平均 소비량 578千B/D

91년중 石油製品 日平均 예상소비량 820千B/D

精油社 설비증설계획

	규모	소요액	완공연도	스크랩
油 公	16만B/D	865억	91년	535千B/D
京 仁	10만B/D	2600억	91년	-

(3) 原油도입 및 石油수출입

가. 현행제도

法	施行令
<原油·天然가스의 구입계약 등의 승인>(제16조) 1. 허가권자 ○ 動力資源部 長官 2. 허가사항 ○ 原油 또는 天然가스의 구입계약이나 수송계약의 체결 ○ 同 계약내용의 변경	

	규모	소요액	완공연도	스크랩
雙 龍	9만B/D	400억	90년	-
極 東	6만B/D	-	88년	-

<資料> 業界

시설소요 전망

	정제시설	분해시설
1992~1996	15만B/D×2基	3만B/D 1基
1997~2001	10만B/D×2基	3만B/D 1基
2002~2010	15만B/D×2基	
計	80만B/D	6만B/D

<資料> 에너지經濟研究院

다. 문제점

- 製品收率향상을 위한 정제시설 고도화 사업추진이 제약되는 등 민간의 경제성판단에 의한 자율적인 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도한 투자규제로 제품수요구조변화에 따른 重質油分解施設, 脫黃施設 등 투자의 적기이행이 어려움에 따라 重·輕質油間 수요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라. 외국의 예

- 日本의 경우 石油業法上 경미한 시설개조 이외에는 허가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율화되고 있는 추세임.
- 美國의 경우 전면자율화임.

法	施行令
〈石油輸出入法の 신고〉(제11조) 1. 신고 ○ 動資部長官 2. 자격요건 ○ 무역거래법에 의해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	〈구비서류〉 ○ 승인 신청서 ○ 신고서 ○ 原油구입 계약서 사본 ○ 승인신고자의 石油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서 1부

나. 현 황

○ 原油도입 형태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사회간 直去來 (D-D) 통한 도입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

부간(G-G) 거래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반면 現物市場의 油價하락에 힘입어 原油의 現물도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原油도입 현황

	1981	1983	1985	1986	1987
도입량(百萬배럴)	175.97	184.65	203.44	212.30	217.33
도입액(百萬달러)	6,371.18	5,572.45	5,572.15	3,345.52	3,702.09
도입단가(\$ / B)	36.21	30.18	27.39	15.76	17.03

다. 문 제 점

○ 현재 민간이 原油도입에 대한 인력 및 정보면에서 정부에 비해 크게 우월한 실정인 바, 개별 구입계약이나 수송계약 체결에 대한 정부개입은 불필요한 시간적·절차적 낭비를 초래함.

○ 무역거래법상 무역법 허가를 받은자가 별도로 動資部에 石油輸出入業을 신고해야 하는 등 규제가 중시되고 있음.

○ 原油도입 및 石油製品 수출입에 대한 정부규제는 油價 자유화 방향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라. 외국의 例

○ 日本의 경우 「石油業法」上 原油도입의 정부 승인 조항 없음.

(4) 油價 관리

가. 현행제도

法	施行令
〈石油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지정〉(제15조) 1. 대 상 ○ 石油정제업자, 石油수출입업자, 石油판매업자의 石油판매가격 2. 지정사유 ○ 石油판매가격이 부당하게 양등하거나 하락할 경우	

法	施 行 令
3. 내 용 ○ 동자부장관이 石油판매가격의 최고액 도는 최저 액을 지정할 수 있음.	

나. 현 황

〈油價산정방법〉

○ 稅前工場渡 가격

精油5社の 평균생산비용을 가중평균한 것을 기초로 하여 정부가 결정함(평균 복합단가)

- 비용 구성 항목

原油費

關稅, 基金

原油도입 금융비

精製費

精油社 이윤

기 타

- 加重指數는 각 精油社 판매량

- 제품별 가격배분

- 石油製品은 連產品이므로 각 제품별 原價산출이

어려움.

- 따라서 제품별 비용 차이 없다고 보고 정부가 收益製品(휘발유, 경유), 사회적 제품(등유, LPG), 국제경쟁제품(나프타, B-C油)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산정

- 휘발유, 경유, LPG 등은 複合單價를 웃도는 선에서 나프타, 重油, B-C油는 複合單價를 하회하는 선에서 결정됨.

○ 稅後消費者 가격

- 세전공장도가격에 소비 및 사업정책적 차원에서 특별소비세 부과하고 있으며, 그의 부가가치세, 수송비, 유통마진 등을 부과하여 산정함.

- 현재 國際價 보다 높은 油種 : 휘발유, LPG, B-C
國際價 보다 낮은 油種 : 등유, 경유

石油製品에 부과되는 諸稅의 국제비교

	韓 國	日 本	臺 灣
○ 特 別 消 費 稅	3.59 \$ / B	15.85 \$ / B	3.48 \$ / B
휘 발 유	100%	87~110%	12%
경 유	9%	94%	10%
L P G	8%	55%	7.5%
B - C 油	-	-	3%
○ 附 加 價 值 稅	3.05 (전유종 10%균일)	-	2.11 \$ / B (전유종 5%균일)
計 (부과율%)	6.64 \$ / B (24.6%)	15.85 \$ / B (44.5%)	5.51 \$ / B (14.0%)

〈註〉日本은 종량세를 증가세(%)로 환산하였으며, LPG는 차량용에만 부과됨.

〈資料〉大韓石油協會 1988. 2

主要國과의 石油製品 소비자가격 비교

(單位: \$ / B)

		韓國 1988.6	日本 1988.3	臺灣 1988.3	프랑스 1988.3	西獨 1988.3	美國 1988.3
普通揮發油	가격	90.3	154.1	88.8	134.3	86.1	38.2
	지수	100	171	98	149	95	42
燈油	가격	40.8	61.7	61.1	-	-	-
	지수	100	151	150			
低黃輕油	가격	39.9	90.7	58.3	92.1	84.2	46.2
	지수	100	227	146	231	211	116
低黃 B - C 油	가격	22.5	29.4	25.3	20.2	19.6	15.7
	지수	100	131	112	90	87	70
LPG (\$ / 톤)	가격	532	1,789	349 ¹⁾	-	-	176
	지수	100	337	66			33
비 고(1\$ =)		736.3 원	127.25 ₩	28.64 NT \$	5.61 F.Fr	1.66 DM	

〈註〉 1) 유통수수료 제외 가격임.

○ 국내 石油類 가격 중 관세, 石油事業基金, 特別消費稅 등 각종 정부부문의 비용이 31%를 차지 臺灣등 경쟁

국 수준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油價의 政府關聯 비용 비교

	韓國	日本	臺灣
原油	관세 : 1.6 \$ / B(정율 10%) 방위세 : 0.4 \$ / B(정율 2.5%) 기금 : 5.5 \$ / B	관세 : 0.8 \$ / B(정액 640₩ / Kl) 석유세 : 0.8 \$ / B {(CIF×관세)×4.7%}	관세 : 0.8 \$ / B(정율 5%) 항만세 : 0.1 \$ / B(정율 1%)
	7.0 \$ / B	1.6 \$ / B	0.9 \$ / B
石油製品	특소세 : 3.1 \$ / B 부가세 : 3.1 \$ / B	소비세 : 15.6 \$ / B	화물세 : 3.7 \$ / B 신영업세 : 2.2 \$ / B
	6.2 \$ / B	15.6 \$ / B	5.9 \$ / B
비 고	政府가 기금으로 關聯 産業支援 및 유가완충재원으로 활용	정유사가 환차익을 자체흡수하여 환차손 발생시 등에 대비	中國石油公事(CPC)가 약 15~16 \$ / B 상당액을 유보후 政府 재정 충당 및 유가완충 재원으로 활용

〈資料〉 大韓石油協會

다. 문제점

- 石油事業法上 石油판매가격의 정부고서를 石油가격이 부당하게 등락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가격규제 수단으로써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油價산정시 정유사별 규모경제 차이 고려치 않고 획일적 단순가중평균에 의해 산출되는 등 객관성 있는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프타, 경유의 低價유지 휘발유의 高價유지 등을 결정함에 따라 油種間 가격구조 왜곡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휘발유, LPG등 高價製品的의 수입성향과 나프타 등 저低價製品的의 생산기피 현상이 나타나며, 특

히 나프타를 이용한 LPG제조 등의 시설투자도 유발케 하고 있음.

- 低油價 정책으로 인한 정유업계의 적정이익실현이 제한되고 있으며, 정유사 이윤율의 제한(자기자본 10%) 등으로 원가절감유인이 희박함.
- 정부통제가격으로 가격변동요인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나므로 가격조정시 경제에의 영향력이 확대됨.

라. 외국의 예

- 美國, 西獨, 英國 등 대부분의 歐美제국은 자율화임.
- 日本의 경우도 사실상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臺灣의 경우 정부가 규제하고 있음.

(5) 石油수급조정

가. 현행제도

法	施 行 令
<p>〈石油수급등의 조정 명령〉 (제17조)</p> <p>1.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石油정제업자, 石油수출입업자, 石油판매업자 <p>2. 사 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의 石油사정의 변동으로 石油수급에 중대한 차질 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 石油유통질서 혼란으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저해하거나 저해우려시 <p>3. 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주요수급자별 石油배정 ○ 石油정제시설의 가동 및 조절 ○ 石油정제업자의 유종별 생산비율 ○ 石油의 비축과 저유시설 ○ 石油의 도입방법 및 수출입 ○ 石油의 위탁가공 ○ 石油製品的의 규격 및 정량거래 ○ 石油정제업자, 石油수출입업자 또는 石油판매업자 상호간의 석유등가교환 또는 분배사용 ○ 石油유통시설 및 그 사용 ○ 石油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나. 문제점

- 조정명령은 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바, 조정명령이 일반적으로 남용될 경우, 石油産業의 시장기능을 크게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조정명령의 범위가 石油의 도입,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조정명령 사유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행정편의에 의한 정부의 개입이 何時라도 가능함.

다. 외국의 예

- 日本의 경우 「石油業法」상 수급조정명령 조항 없으며, 비상시 대비해서 정부가 石油배급 등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石油需給適正化法」이 별도 입법되었음.

(6) 石油事業基金

가. 현행제도

法	施行令
<p>1. 基金의 설치(제17조의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石油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石油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p>2. 基金의 조성(제17조의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石油수입 또는 石油製品판매시에 石油수입업자 또는 石油정제업자로부터 징수금 ○ 국제原油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국내石油정제업자가 취득한 차등이윤 중에서 징수금 ○ 韓國石油開發公社法 제11조 1項 제 4의 규정에 의한 納入金 ○ 제17조6의 규정에 의한 借入金 ○ 基金의 운용으로 생기는 收入金 <p>3. 基金의 용도(제17조의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石油의 비축 <p>○ 石油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原油의 차등가격과 石油製品 가격의 평준화로 인하여 石油정제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보전 ○ 石油製品의 품질관리사업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자원개발사업 <p>4. 基金의 관리(제17조의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인정시 기금관리자에게 	<p><基金의 용도> (제1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石油의 비축·저장 및 수송에 필요한 설비의 관리 ○ 비축용 石油의 구입 ○ 회사의 石油비축사업추진 운영비등 ○ 石油개발사업에 필요되는 자금의 융자 ○ 石油자원개발 借入金에 대한 채무보증 ○ 公社의 석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 <p><石油事業基金운용심의위원회>(제12조의 3)</p> <p>1. 위원회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委員長-동력자원부 차관

法	施 行 令
필요한 감독·명령 가능 ○ 基金管理者의 지정 및 기금의 관리·운용·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5. 基金의 차입(제17조의 6) ○ 基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동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 혹은 임시 차입 가능	○ 委員-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및 동력자원부소속 공무원중 소속장관 지정하는 1級 국가공무원, 동자부장관 위촉 2인 이내 2. 심의사항 ○ 基金관리·운용지침 ○ 基金운용계획 ○ 基金의 결산보고 ○ 기 타

나. 현 황

○ 1977년 石油事業法 개정하면서 石油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石油개발사업 추진위해 石油事業基金 설치

○ 88년 7월 18일 현재 石油事業基金 징수 규모
 - 原油 : 5.34 \$ / B
 LNG : 45 \$ / 톤

○ 基金운용내역

(1987年末 현재)

	금액(억원)	주 요 내 역
구 성 總 額	32,403	基金징수 및 운용수익
보 조 사 용	1,555	原油도입선 다변화 및 石油품질관리사업 등
資 産 現 황	30,848	▼
- 投 資	7,963	비축기지 3개소 備蓄油 31百萬배럴등
- 融 資	11,124	석유개발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등 에너지 자원개발사업
- 現金(時在金)	11,761	油價완충용 예비자금 등

○ 時在金 내역

• 油價 완충용 예비자금	6,439億원
• 88年度 移越金	2,486億원
• 사업지원 未支給金	2,836億원
時在金 합계	11,761億원

크며, 여유 자금의 운용구조가 불안하여 통화교란 등의 소지가 있음.

○ 石油부문의 정부부문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石油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되며, 石油基金의 他用途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음.

○ 石油事業基金 징수 기준이 불명확하며, 징수규모가 자주 변동됨에 따라 민간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다. 문제점

○ 基金運用규모가 방대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라. 외국의 예

○ 日本의 경우 「石油業法」上 管理基金의 규정은 없고 비슷한 성격으로 精油社가 유보분을 별도 징수하고

있음.

○ 臺灣의 경우 國營 石油公社 유보분으로 징수하고 있음.

(7) 石油流通

가. 현행제도

法	施行令
<p>〈石油판매업의 허가〉(제12조)</p> <p>1. 대 상 ○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者와 부산물인 石油製品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p> <p>2. 허가기준 ○ 시행령에 定함.</p> <p>3. 허가절차 ○ 동자부장관 (동자부령에 定함)</p>	<p>〈石油판매업의 허가기준〉(제9조)</p> <p>1. 일반대리점</p> <p>① 시설기준 ○ 저장시설 : 서울, 仁川 및 京畿道の 경우 1500kl 이상. 기타지역 경우 700kl 이상 ○ 수송장비 : 서울, 仁川 및 京畿道の 경우 100kl 이상. 기타 50kl 이상</p> <p>② 자본금 서울등 1억원 이상 기 타 5천만원 이상</p> <p>③ 취급 유종 용제제외, 石油製品</p> <p>2. 주유소</p> <p>① 시설기준 ○ 저장시설 : 서울시 40kl 이상 기 타 20kl 이상 ○ 注油器 : 서울 4대 이상 기타 2대 이상 ○ 공중화장실 1개소</p> <p>② 취급油種 휘발유 · 등유 · 경유</p> <p>〈주유소 허가신청서류〉</p> <p>○ 지하저장시설 명세서 ○ 注油器 명세서 ○ 대리점 경영자인 石油販賣業者와 체결한 공급계 약서 사본 ○ 경영자의 신원보증서</p>

나. 현 황

- 판매업의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동자부장관 승인시 지역별로 적정기준 추가 가능함.
(현재 法定施設基準과 함께 주유소 상호간 보안거리 1~3km 유지가 동자부 승인후 각 市·道 고시 사항으로 되어 있음.)
- 1981. 3. 14조정명령에 의해 精油會社의 신규 판매업소 설치 금지되어 있음.
- 精油社는 신규 직영 LPG충전소와 石油代理店 설치 금지
- 精油社와 직영대리점은 신규주유소 설치 금지
- 현재 주유소마다 精油社의 폴사인(商票)이 표시되어 있으나, 주유소의 精油社別 복수거래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폴사인제도(系列化制度)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石油製品의 유통마진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에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石油製品 유통마진 국제비교
(單位: C / l)

	韓 國	벨기에	프랑스	西 獨	日 本
流通마진	2.2	6.0	5.6	4.5	15.3

〈註〉 휘발유, 경유의 물량가중평균임. (1986)

다. 문제점

- 石油판매업의 엄격한 허가제 실시로 허가권이 이권화 되는 등 공정경쟁여건이 제한되고 있으며, 과도한 설비기준의 적용 등으로 대리점 등의 불필요한 설비의 보유를 유발시키고 있음.
- 정부의 3.14 조정명령으로 유통단계의 계열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주유소의 대리점 공급계약 체결의무로 유통경로가 인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自營주유소와 정유사간의 직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등으로 自營주유소와 直營주유소간의 공정경쟁여건이 제한되고 있음.
- 정부가 유통단계별 가격·마진을 조정함으로써 판매부문의 가격·서비스경쟁이 미흡함.

라. 외국의 예

- 日本의 경우 「石油業法」上 石油판매업은 신고제로 되어 있음. ☒

